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8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이수진 · 서미화 · 김정호

송옥주 · 김남희 · 최혁진

남인순 · 김문수 · 서영석

백혜련 · 박희승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복무형 지역 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계약형 지역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상·행정상의 조

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계약형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지정·고시한 의료기관과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의 계약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사에게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분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파견·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할 의사도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의사입학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말한다.
3. “복무지역”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말한다.

4. “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 의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계약기관”이란 계약형 지역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 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계약형 지역 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상·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 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역 의사 입학전형 및 지역 의사 입학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지역 의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장 지역의사의 선발 및 근무

제1절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배치 등

제5조(지역의사입학전형) ①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입학전형의 선발인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입학전형의 비율은 시·도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포,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복무지역, 복무기간 등의 선발에 따르는 조건과 그 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의사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복무지역 및 복무기간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의 장애, 출산, 육아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복무지역 내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기산일, 산입방법 등 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복무기관의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복무형 지역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배치하고(단, 제6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간 중에는 해당 수련기관을 복무기관으로 보고 이에 배치된 것으로 본다),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복무기관의 지정 및 복무형 지역의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형 지역의사 배치의 시기·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복무지역·복무기관의 변경) ①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

유로 복무지역 내에서 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무형 지역의사를 또는 다른 시·도의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해당 시·도 내의 다른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지역·복무기관 변경 및 파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계약 등

제9조(계약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의료취약지의

분포, 의료인력의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별 계약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별 의료인력의 확보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료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관 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기관의 지정의 시기·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채용절차 및 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관의 장이 계약형 지역의사를 채용할 때에는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그 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관이 해당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도 제9조에 따른 계약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③ 계약기관은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절차·채용기준·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등

제1절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중단·반환

제11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주거 지원, 경력개발 지원, 직무교육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역의사의 보수는 소속 의료기관이 그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은 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해외 연수 등에 우선 선발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해당 시·도 내의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1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경우(제6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질병, 심신의 장애, 출산, 육아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에 해당 계약형 지역의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

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의사입학전형 선발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중단·반환

제13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3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비등에 대한 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이 조에서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중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③ 제2항제2호의 사유로 반환금을 반환한 사람이 그 이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의사의 근무실태 관리 및 조건 불이행 조치

제15조(근무실태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적정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양성·배치 및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이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역의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없어진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지된 경우

제16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지역의사는 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지역의사 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면허의 정지·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이사가 제17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하여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잔여 복무기간 이내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복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1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중단 및 반환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중단 및 반환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자격의 정지
4. 제18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무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